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지 급 명 령

사 건 2023차전 2445 임대차보증금

채 권 자 김승현 (900322-1241713)  
부천시 부천로24번길 38, 703호 (심곡동, 더원스태이트)

채 무 자 유지성 (851128-1151117) 2023.4.12. 송달, 2023.4.27. 확정  
인천 남동구 포구로 45, 201동 1005호 (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2단지)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 4. 3.

사법보좌관 한상호



정본입니다.  
(채무자 유지성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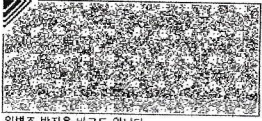
지급명령 확정 당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 권 자 김승현  
부천시 부천로24번길 38, 703호 (심곡동, 더원스태이트)

채 무 자 유지성  
인천 남동구 포구로 45, 201동 1005호 (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2단지)

2023. 5. 1.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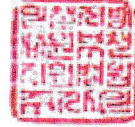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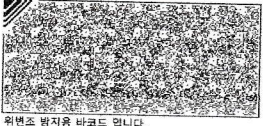
음성출력용바코드

법원주사 변윤섭



- ※ 1. 채무자가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302,000,000 원
- ※ 독촉절차 비용 176,000 원
- (내역 : 송달료 62,400 원, 인지액 113,600 원)

## 청 구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1. 02. 14. 피고 소유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24번길 38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제7층 제703호 67.52㎡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23. 03. 10.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해야 하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명도하지 못하였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의 전부를 점유 중입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02,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